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年 8月

碩士學位論文

海上保險上 欺詐的 保險金請求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楊 真

海上保險上 欺詐的 保險金請求에 관한 研究

A Study on Fraudulent Claims in Marine Insurance

2023년 8월 25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楊 眞

海上保險上 欺詐的 保險金請求에 관한 研究

지도교수 이 창 재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楊 真

楊眞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유광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진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창재 (인)

2023년 5월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I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2
1.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4
제2장 보험사기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제1절 보험사기의 의의와 특징	8
1. 보험사기의 의의	8
2. 보험사기의 폐해	9
3. 보험사기의 요인	10
가. 관행적인 소송 기피 및 관대한 처분	10
나. 경제적 침체로 인한 범죄의식 결여	12
다. 사행성이 높은 고액 고배율 보험상품 판매	12
라. 보험사기 인식 부재 및 외형경쟁	13
제2절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사기	14
1. 해상보험의 특성	14
가. 국내 법률의 제한적 적용	14
나. 기업보험	15
다. 국제성	16
2. 해상보험과 보험사기	16
가. 허위계약	17
나. 위장사고	17
다. 고의사고	17

라. 공동해손을 이용한 보험사기	18
마. 위조청구	18
제3장 주요 국가의 해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 현황	19
제1절 영국 해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	19
1. Common law 측면에 따른 결과	19
2. MIA 1906에 적용	20
제2절 중국 해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	23
1. 해상법	23
2. 보험법	24
제3절 한국 해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	2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6
2. 형법	27
3. 보험업법	28
가. 보험사기 조사	28
나. 보험사기 행위의 금지	28
4. 보험계약법(상법제4편)	28
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로서 무효	28
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29
다. 사기로 인한 초과 또는 중복보험의 무효	30
라. 우연성 결여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30
제4절 비교연구	31
제4장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33
제1절 영국 해상보험 사기제도의 분석	33
1. 영국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전통적인 정의	33
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주체	33
나.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주관상태	34
다.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행위 유형	35

2. The DC Merwestone	37
가. 사실관계	37
나. 판결내용	39
다. 대법원 판결내용 분석	42
3. 영국 해상보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새로운 법적 쟁점	44
가. 최대선의원칙	44
나. 사기적 청구에 대한 통일된 법적 결과	45
다. 사기적 청구에서의 선지급 반환 문제의 명확화	46
라. 단체 보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 탐색	46
제2절 영국 개정 보험법상 중국 해상보험 규정에 시사점	47
1. 사기적 보험금청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족	47
2. 해상법과 보험법의 사기적 청구에 대한 규정	49
3. 해상보험에서 과다 청구의 법적 결과에 대한 부적합한 규정	50
4. 단체 보험에서 사기적 청구 구제 방안 부족	51
제3절 현행 한·중 법률의 개선 방향	53
1. 현행 중국 법률의 개선 방향	53
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정의	53
나. 해상보험과 일반보험의 사기적 청구규칙의 관계	54
다. 사기적 청구 규제 법안의 정책 방향 결정	55
라.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 규정 마련	56
2. 현행 한국 법률의 개선 방향	57
가. 보험사기 정의 재정립 및 대상 범위 확대	57
나. 단체 보험 사기적 보험사기에 관한 제도 설립	58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A Study on Fraudulent Claims in Marine Insurance

YANG, Zhen

Advisor: Prof. LEE, Chang Jae,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definition of fraudulent refers to that in the business of marine insurance, the applicant or the assured or the beneficial owner claim a statement to the insurer through making up the subject matters or the accident, or exaggerating the level of the loss or manufacturing contingences in purpose in order to defraud the premium. For protecting the development of the marine insurance industry, the men who carry out the fraudulent claims under marine insurance should be legally punished. Before that, it is important to pinpoint the fraudulent claims under marine insurance's standard of affirmation and legal consequence in the first place.

The cases of fraudulent claims frequently occur in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Britain is a leading country in the study of fraudulent claims. The fraudulent claims aren't prescribed in Marine Insurance Act 1906. Thus, the judge tends to solve cases of fraudulent claims with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n the obligation of post-contractual. When Insurance Act 2015 was enacted, the fraudulent claims system is stipulated in clauses 12 and 13. The 12 and 13 clauses make a new stipulation of fraudulent claims that independently exist rather than rely on the obligation of post-contractual utmost good faith. Further, the problem that interim payment should or not be return is determined by law. The legal liability

has been more reasonable division in 12 clause Insurance Law 2015. It is better that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parties to an insurance contract. The fraudulent claims of group insurance has been clear regulation in 13 clause of Insurance Act 2015, the clause can be bett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insured and other related person.

The fraudulent claims system's regulation is not comprehensive in Insurance Act 2015. The law doesn't has clear regulation in fraudulent claims meaning result in it cannot be qualitative clear in some special cases. And from the view of system integrity, the meaning of fraudulent claims not clear is not benefit to fraudulent claims the system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special standards of fraudulent claims has not been solved though clear regulation of Insurance Act 2015. The problem is just rely on judges discretionary in practice. It's not benefit to the system application. And the meaning of fraudulent claims system has not clear regulation in China and Korea's law. Besides, how to deal with the problem of some insured and other related person in group insurance making fraudulent claims has not been regulation in China and Korea's law.

Given the studying about fraudulent claims of the UK Insurance Act 2015 is on top level all over the world and the UK has accumulated a large amount of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in practice for the UK belonging to case law countries, China and Korea can borrow its mature and advanced legislation experience and its complete and rich cases in this field, which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the stable development of insurance industry in China and Korea.

Key words: fraudulent claims, group insurance, Insurer fraudulent, Insurance Act 201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현대 보험업은 14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으며 몇 백 년 동안 세계적으로 오래도록 쇠퇴하지 않는 금융업이 되었다. 또한 국제 경제 발전, 금융안정, 산업서비스와 사회문명 등의 방면에서 보험업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각종 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해상보험의 발전은 다른 보험분야의 발전을 이끌었고 전체 보험업의 번영을 가져왔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어쩌면 해상운송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해상무역의 이익과 리스크는 공존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해상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험제도가 보상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상운송을 통한 인류의 발전에 해상보험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상보험업은 해운업계와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사기이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인원은 102,679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하였으며, 적발인원도 전년(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하였다.¹⁾ 보험사기는 보험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지만 궁극적인 손해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드는 보험업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해상보험도 보험업의 일종으로 보험사기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영국의 해상보험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깊고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 법원의 해상보험에 관한 사기적 보험금 청구소송 처리는 기본적으로 청구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법적 결과를 결정한다. 영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이론의 연구도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문제를 두 개로 나누었는데, 즉 사기적 보험금청구 정의 문제와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1) 금융감독원, 「2022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2023. 3. 24, 1-2면.

법적 결과 문제가 그것이다. 100여 년의 발전과정에서 영국은 1906년 해상보험법 (MIA 1906)과 판례법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정법 규정과 해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상보험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치를 드러내게 되었다.²⁾

이 점을 인식하여 영국은 해상보험에 관한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오래된 규칙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 관련 규정 및 "The DC Merwestone" 사건의 판례에 근거하여 영국의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규범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기본 이념, 체계적 틀 등이 새롭게 수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의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새로운 규칙(New Rule)이 거의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2015년 최대선의원칙에 의한 개조를 통해 보험법을 만들었고 사기적 보험금청구라는 새로운 법적 결과를 확립했다. 명실공히 영국은 해상보험 강국으로서 해상보험사기 대응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국의 해상보험사기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탐구하고, 한국과 중국의 해상보험사기에 관한 법원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영국은 근대 해상보험업의 발전 중심지로 해상보험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오랫동안 탐색하고 연구하여 비교적 발전된 해상보험 법체계를 구축했다. 게다가 최근 영국의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제도는 기본 이념, 제도적 틀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출발을 맞이하였다. 영국의 해상보험법 체계가 전세계 해운업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영국의 해상보험 분쟁 해결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영국법상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 문제에 관한 연구는 이론과 실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영국법에 따른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 대한 이해와 인식은 한국의 해상보

2) 杜莹, 《英国海上保险欺诈性索赔的法律问题研究》, 辽宁大学硕士学位论文, 2017年.

험입법을 보완하기 위한 해외 비교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현행 해상보험법규의 갱신과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의의도 있다. 동시에 영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규칙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한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해 교훈을 줄 수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런던은 세계 해상보험의 중심지 중 하나로서 대량의 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수많은 해상보험 분쟁 해결 업무도 맡고 있다. 영국법 아래에서의 해상보험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항실무에 위험경보를 일부 제공하여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영국법에서 사기적 청구를 처리한 경험도 한국 해상보험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보험법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법리와의 차이점 연구는 물론 해상보험과 관련된 무역인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보험사기 주체를 보험자와 보험소비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제3자 등)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 해당 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있어서 본 연구가 향후 영국 보험법 연구는 물론 실무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본문은 주로 비교연구의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중국 및 영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제도와 비교법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제도 개혁에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제공한다.

한국·중국·영국의 문헌을 검색하여 통합하는 기초 위에 본고는 우선 영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제도상의 입법과 판례를 연구하고 다음으로 중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 및 인정 범위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한국법과 비교 연구하여 참고할 점을 모색한다.

본문의 주요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보험사기와 해상보험의 특성과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사기 이론적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영국 중국과 한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법률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현행 법률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 앞서 논의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2015년 영국 보험법의 제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해동·신건훈³⁾은 2015년 영국보험법의 신설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으로 최대선의 의무 및 고지의무, 보험 담보,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 구제, 적용 제외 규정 등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영국보험법에는 보험자가 조사를 적절하게 진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 보상 규정이 다루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 영국의 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보험업계와 해운업계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 동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전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창희는⁴⁾ 2015년 영국보험법의 개정된 내용을 면밀한 고찰을 하였고 특히 공정 제공의무, 워런티,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제체의 효과, 임의규정성, 해상보험약관의 편입요건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내용에 대해서 시행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외항의 선박보험·적하보험, 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있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거나 영국법을 분할지정하는 보험거래가 행해지고 있고, 한국 법원은 해상보험에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영국법의 개정은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일림·라공우⁵⁾는 영국보험법의 주요 개정 조항인 최대선의 의무 및 고지의무, 보험 담보, 사기적 보험금청구, 불리한 조항 및 투명성 요구의 내용과 판례를 면밀히 고찰했고 한국 해상보험시장도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많은 판례

3) 전해동·신건훈,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2. pp.407-408.

4) 한창희, (2020). 해상보험에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시행상 문제점. 법학논총, 32(3), 583-652.

5) 조일림·라공우, (2018).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구. 국제상학, 33(2), 141-163.

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해상보험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Insurance Act(2015)에 따라 개정된 주요 조항을 기반으로 한국의 현행법인 민법, 상법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해상보험자인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의 보험계약규정과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약관, 그리고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조항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이 법의 한국 현행법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진흥기⁶⁾는 영국에서 발생한 Carter 사건 이후, 최대선의원칙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들과 M.I.A 해석을 중심으로 깊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최대선의의무"의 적용과 그 범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한국의 민법, 상법 및 판례, 그리고 보험법 개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민정⁷⁾은 MIA 1906에 관한 분석에서 최대선의의무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대선의의무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최대선의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 계약 취소 이외의 구제 방안이 없다는 점이 그 내용이었다. 그리고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손상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고명규⁸⁾는 상법 보험편의 최대선의의무에 대해 분석하였고, 2008년 한국 상법 개정안 제638조 제2항에서 도입하려 했던 최대선의 의무 규정이 굳이 법률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합리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보완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재우⁹⁾는 2015년의 영국 보험법에 대한 깊은 분석을 통해 해상보험계약의 최대선의 원칙에 따른 고지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쌍방의 계약이지만, 이 원칙에 따른 고지의무는 MIA 1906의 규정에

6) 진흥기, "영국법상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3호, pp.201-228. 2016.09.25.

7) 이민정(2013), "MIA에서 최대선의 의무에 대한 연구 -고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를 중심으로-", 동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60) pp.253-276. 2013.08.

8) 고명규(2014), "해상보험에서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41, pp.327-363. 2014.05.

9) 김재우.(2019).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원칙에 따른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2015년 영국보험법과 관련하여.무역학회지,44(3),137-154.

따라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의무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영국 보험법은 현재의 법률 판례 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부분적으로는 쌍방의 의무로 수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원¹⁰⁾은 2015년 영국보험법 상의 고지의무 제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상 의무를 전부 아니면 비율적 보상 원리를 도입한 점은 한국 상법의 입법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완용¹¹⁾은 한국 해상보험법의 보험자 면책사유의 개정 방안으로 영국 해상보험법의 담보 특약 내용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보험계약 당사자가 손해 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행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로, 적하를 보험에 부과한 경우에는 송하인, 수하인 또는 하주인 용선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포함시키도록 주장하다.

신건훈·이병문¹²⁾은 MIA 2015 제13A조는 보험금 청구와 악의적 실무를 근절하려는 법률정책적 의미를 가지며, 보험자의 시간 의무 위반 시 피보험자에게 구제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변화는 계약자 이익 제고, 신뢰 증진, 사법권 일관성 유지 등에서 긍정 효과가 있지만, 법적·실무적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으며 제 13A조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악의적·무원칙적 실무를 근절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으며, 보험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계약법 원칙 및 실무 관행으로 인한 제한요인 때문에 보험법개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학자들은 2015년 영국 보험법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하고 최대선의원칙, 통지의무, 담보특약, 보험금지급지체 같은 특정 수정 내용에 대한 심층 토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기적 보험금청구라는 중요한 주제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

10) 이정원(2016),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고찰", 海事法学研究 제28권 제2호, 2016.07.25.

11) 정완용,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5.

12) 신건훈·이병문 (2021).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에 의거한 법률개혁의 주요 쟁점 및 효과를 중심으로. 무역금융보험연구, 22(4), 19-33.

서 본 연구는 2015년 영국 보험법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개정 내용에 중점을 두고 선행연구의 공백을 채우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법률을 비교하면서, 한·중의 사기적 보험금청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가능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속 학자들이 보험법에서의 사기적인 보험 청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법적 개혁에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2장 보험사기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보험사기의 의의와 특징

1. 보험사기의 의의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액을 부풀려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¹³⁾ 예를 들자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거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날조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등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¹⁴⁾¹⁵⁾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덕적 해이와 범죄를 유발하여 보험금이 누수되고 보험계약의 단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궁극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하는 등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⁶⁾ 보험사기 방지특별법¹⁷⁾이 ‘보험 사기행위’를 규정하기 전에는 ‘보험사기’라는 용어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는 없었다. 이에 보험업법 제102조의 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와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형법 제347조(사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험사기를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대가 없이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

13)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11호, 한국법학원, 2009. 6, 142면.

14)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15) 양지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현행 법률과 제도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6면.

16)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166면.

17) 법률 제14123호 공포일 2016.03.29 시행일 2016.09.30 제정

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18),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부당한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 19) 등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그저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한 형태로, 사기죄의 성립을 위한 기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기죄에 대한 판결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보험사기"는 '보험자를 고의로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사기죄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보험과 연관된 특성을 반영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²⁰⁾

2. 보험사기의 폐해

보험사기는 확실히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손해가 커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며, 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얻기 위해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와 효과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다.²¹⁾

보험 사기자의 주요 표적은 보험회사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선의의 보험

18) 조해균,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2001) : 3.

19) 장경환, "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계약 법상의 몇 가지 문제", 경희법학 제40권 제1호 (2005) : 80.

2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1 판결 등

21) 王利明, 惩罚性赔偿研究[J]. 中国社会科学, 2000 (04).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게 만드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며, 보험 시스템의 기초를 위협한다. 즉,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곧 무리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정직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추가로, 보험사기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행위의 모방 및 공감을 촉진할 수 있어, 전체적인 윤리관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 행위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유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보험사기 행위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면, 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회적 위험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3. 보험사기의 요인

가. 관행적인 소송 기피 및 관대한 처분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를 무의식적으로 촉진하게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보험 사고 발생 시, 회사들은 보험금청구에 대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나 수익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법정 비용과 기타 비용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고객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심지어 의심스러운 사례일지라도 분석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분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의심스러운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²²⁾

대다수 사람들은 보험사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곤 한다. 이들은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사소하며 용서될 수 있는 범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조세 기피와 같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죄로 인식하며, 이로 인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보험사기를 자신들이 여러 해 동안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를 복구하는 방법, 즉 일종의 '대차 대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²³⁾ 부정직한 보험

22) 김기혁, "보험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6면.

23) 박일용, 안철경, "보험 사기 성향 및 규모 추정", 보험개발원, 1999.7, 13면.

계약자들은 보험회사에 대한 위험 인수에 대한 비용이나 자신들의 보험금 납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보험회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친구나 친척들의 도움에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동은 보험계약의 원칙을 위반하며,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험회사를 기만하는 행위를 부추긴다.

사람들은 흔히 보험사기를 피해자가 없는 단순한 행위로 간주하고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1995년 IRC의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성향이 드러났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인의 24%가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이전에 지불한 보험료를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에서 수행된 조사에서는 대도시 주민의 40%가 이와 같은 행위를 수용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차량 주행거리를 줄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32%,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주차 위치를 거짓으로 기술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였다. 일부 사람들은 지불하는 보험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이 저지르는 보험사기를 정당화하는 경향도 보였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보험사기를 최악시 내지는 비도덕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잠재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Alfred Manes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²⁴⁾

- (1) 보험의 특수적인 불확실성(사고 발생 시기, 발생 여부 및 손해 정도의 불확실성)이 범죄 성향을 자극하게 되어 보험사기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기 때문.
- (2)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그릇된 인식 및 이미지 때문에 보험금을 사취하는 그릇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려 하기 때문.
- (3)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은 그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보험범죄행위를 통하여 환불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 (4) 보험 범죄행위가 보험사의 재산을 줄이지도 않고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
- (5) 보험 범죄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으며 발각된다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상의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는 보험범죄행위를 최악시·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로

24) Vgl. Manes, Alfred : Versicherungswesen Band I.S.349.;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 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35집, 한국보험 학회, 1990, 81면.

도 보지 않는다. 범죄라는 공감대가 없으므로 보험 관계인 및 친지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실정이다.

나. 경제적 침체로 인한 범죄의식 결여

한국에서 보험사기는 열악한 노동 환경, 상대적인 박탈감,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직장에 대한 불안감, 해고 위험, 건전한 노동 정신의 실종과 황금만능주의 만연 등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보험사기의 발단이 되었던 탄광 지역의 집단 역선택의 문제를 상기하면, 가진 자의 부와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대적인 피해의식과 소외감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생활고가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보험사기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범죄의식의 결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²⁵⁾

보험사기는 클레임 청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병원, 자동차 정비소, 보험 사고 처리 브로커 등에 의해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무심코 행동하는 병원들은 보험사기 조직에 허위 진단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하며 이러한 과잉진단 행위는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피해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²⁶⁾

다. 사행성이 높은 고액 고배율 보험상품 판매

보험은 본질적으로 사행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사행성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 바로 고액 고배율 보험상품들이다. 예를 들어, 주말 사고로 인한 사망시 평일 보장금액의 4-10배를 지급하는 특약을 갖춘 보험상품이 있으며, 재해사망 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일이나 주말에 따라 보험 보장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일반사망이나 재해사망 간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상품들은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인 위험 분담과 보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25) 김성태, "보험 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 생명보험협회세미나, 2001.3.15, 7면.

26)李玉泉, 《论保险欺诈及其对策》, 载《保险研究》1998年第12期.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액과 고배율 보장을 제공하는 특약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 범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고 보험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통해 고액, 고배율 특약 상품을 다수 가입하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빈틈은 사회 전반의 보험 체계를 위협하며,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 한도를 설정하거나, 고배율, 고액 보장의 제한 등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 보험사기 인식 부재 및 외형경쟁

보험사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부재와 외형경쟁이 보험사기를 방조하기도 한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사기라 하면 형법상의 사기죄를 의식하여 보험사기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대적인 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의 경우, 엄격한 사전 심사와 검증이 필요하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환경과 경쟁 환경 속에서 계약의 선별적 수용, 즉 언더라이팅(underwriting)에 부족함을 보이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계약 증가는 인사 및 승진의 기준이 되지만, 한편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보험사기를 다루는 부서가 승진의 일부 경로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서의 엄격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부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2절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사기

1. 해상보험의 특성

가. 국내 법률의 제한적 적용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되는 보험증권이나 표준약관에는 대부분 영국법 준거조항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영국법 준거조항의 효력을 일관되게 긍정하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우리 상법 보험편 규정보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이하 'MIA') 및 영국 판례 등이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영국법이 준거법이 됨에 따라, 판례는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651조, 인과관계에 관한 상법 제65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를 승인하고,²⁸⁾ MIA 제33조에 따른 명시적 담보(warranty) 위반으로 인한 보험자 면책을 인정하며,²⁹⁾ MIA 제39조 제5항에 따라 기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한 때에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결과를 승인하고,³⁰⁾ 추정전손에 관한 MIA 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고³¹⁾ 있다.

다만, 판례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해서까지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우리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영국법상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여부와 보험자의 책임 유무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³²⁾ 또한 "이 보험증권상의 모든 책임에 관한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된 경우에도 우리 약관규제법상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³³⁾

27) 대법원 1991.5.14. 90다카25314

28) 대법원 1991.5.14. 90다카25314; 대법원 1996.3.8. 95다28779

29) 대법원 1998.5.15. 96다27773

30) 대법원 2001.5.15. 99다26221

31) 대법원 2002.6.28. 2000다21062

32) 대법원 1998.7.14. 96다39707

적하보험의 경우 통상 위와 같이 준거법 조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박기간 보험의 경우 준거법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약관규제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³⁴⁾ 해상보험계약이 국제사법 제 27조(소비자계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약관규제법은 적용될 수 없다.³⁵⁾

나. 기업보험

해상보험은 해운업자나 무역업자들이 해상위험에 대비하여 체결하는 기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협상력의 차이, 정보불균형 등의 문제가 크지 않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상법 663조 단서).

대법원은 해상보험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³⁶⁾ 즉 상법 663조 단서가 해상보험 등에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조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고 보험 실무상으로도 영국법 준거조항을 둔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도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소형 어선을 소유하며 연안·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영세 어민들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해상보험 사안에서, 비록 해상보험이라고 해도 이 경우는 당사자 사이의 교섭력이 대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³⁷⁾

33) 대법원 2001.7.27. 99다55533

34) 대법원 2010.8.26. 2010다28185 참조

35) 석광현, "국제거래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연구 9, 2003, 81면

36) 대법원 1996.12.20. 96다23818

다. 국제성

해상보험은 선박과 그에 관련된 화물, 그리고 선박이 운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는 주로 국제 무역에서 활용되며, 선박의 손상, 화물의 손실, 해적행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보장한다. 해상보험에 대한 약관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몇 가지 표준 약관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영국의 해상보험 약관이다. 영국의 해상보험 약관은 런던 보험시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이 약관들은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협회약관"이라고 불리는 약관들은 런던 해상보험협회(Lloyd's of London)가 만든 것으로, 이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보험시장 중 하나이다. 이 약관들은 해상보험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일관된 해석과 처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다.

2. 해상보험과 보험사기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란 해상보험업무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등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목적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손해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수단으로 보험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려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고 형태에는 보험목적물의 허위 조작, 보험사고 원인 조작, 과다 청구, 비보험목적물을 보험대상으로 전환, 중복 재보험 가입, 초과 보험 가입, 침몰을 포함한 보험 재산의 고의적 제조 또는 확대, 손해 보고서 위조, 공동해손을 이용해 사기적 청구 등이 포함된다.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는 선박보험이나 화물보험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사기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물 소유자이며 쌍방이 공모할 수도 있고, 사기행위의 상대방은 보험자이다.

몇 가지 주요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37) 대법원 1996.12.20. 96다23818 판결

38) 郑睿.英国夸大损失类型保险欺诈的民事法律后果及其启示[J].保险理论与实, 2016 (12).

가. 허위계약

해상 보험 계약의 보험 목적은 일반적으로 선박, 화물, 선박 운영 수입, 화물 희망이익, 선원 임금 및 기타 수익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서 보험자에게 목적물이 멸실되었다고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형적인 사기적 보험청구의 유형은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관한 해상보험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운송인이 보험에 가입한 화물을 실지 않고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개봉하여 보험목적물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나. 위장사고

위장사고란 보험자의 책임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숨기고 비보험자가 청구해야 할 사고 원인을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말한다. 면책책임 중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허위 보험사고를 꾸며 사기를 실행하는 것은 감항성 문제를 많이 이용하는데, 해상보험 약관에 의하면 선주의 과실로 선박이 운항 부적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제외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주는 손해를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 사고 원인, 은폐 사실을 꾸며 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배상 청구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하여 보험자가 배상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 고의사고

고의사고는 선주, 화주 또는 쌍방이 결탁하여 고의로 선박, 화물 또는 선적의 손실을 만들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기대한 것을 말한다. 그 중 주요 사기 유형은 침몰선인데, 침몰선 사기는 일반적으로 낚고 곧 도태될 고령의 배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선박과 화물을 파손, 침몰시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

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다. 선장이나 선주는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의 가액이 높을 때에는 예정항이 아닌 항구에 배를 정박시켜 현지에서 화물을 판매한 후 해상으로 배를 굴착하여 화물손실을 포함한 책임을 보험회사가 지게 한다.

라. 공동해손을 이용한 보험사기

선적 화물에 공동해손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공동해손, 나아가서는 전손, 사실상 일부의 손해만을 선언하고 선주가 화물을 자신의 것으로 절취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마. 위조청구

이러한 사기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와 상품 검사원 또는 화물 취급자가 공동으로 한 사기유형이다. 상품검사원이나 화물관리원은 그 직책에 따라 상품 검사증명서와 화물관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고의로 실태를 은폐하여 화물손실 규모를 과장하면 보험회사가 간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손해는 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와 선주에게도 다양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⁹⁾

39) 郑睿, 英国海上保险法律与实务[M].上海: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4: 269.

제3장 주요 국가의 해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 현황

제1절 영국 해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

영국 법원은 사기적 보험금청구법 결과에 대한 점진적이면서도 반복적인 특징을 보였다. 영국법에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 규칙은 오랜 발전 과정을 거쳐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기적 청구 사례와 사례 뒤에 있는 보험 적법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개별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사기적 보험청구의 법적 결과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간은 MIA 1906이 제정되기 전의 일반법 규칙 기간, 두 번째 기간은 MIA 1906이 제정된 이후의 MIA 1906 규칙 기간, 세 번째 기간은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규칙 기간이다.

1. Common law 측면에 따른 결과

MIA 1906 시행 이전 사기적 보험청구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규제되어왔다. 이 동안 사기적 보험청구는 일반적으로 보통법에 따라 사기로 처리되며, 권리 박탈(Forfeiture) 규칙을 채택하여 확인되면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보험사고를 날조하는 유형의 사기적 청구는 이 동안 법적 결과가 매우 명확하였다. 1865년 Britton v. The Royal Insurance Company 사건⁴⁰⁾에서 Willies 판사는 당시 영국 법계에서 날조 청구 유형에 대해 " 피보험자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면 그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허위 청구를 한 피보험자는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과다 청구로 인한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는 사기적 부분과 진실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 박탈 효과는 전체 청구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적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40) Britton v.The Royal Insurance Company,(1865)EngR 66.

판단한 사건은 1858년 판례인 Goulstone v. Royal Insurance Company 사건⁴¹⁾이다.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산이 화재로 멸실된 후 파산을 선고받았는데, 파산절차에서 피보험자는 멸실된 재산의 가치를 50파운드라고 하였으나, 이후 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때 200파운드의 손실을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청구서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고의적인 사기라면 청구 전체가 사기이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1865년 Britton v. The Royal Insurance Company 사건은 위 판례의 의견을 지지하여 권리 박탈의 효력이 전체 청구에 미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즉, "법적으로 사기 청구를 한 피보험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보험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모두 최대한 성실성을 지켜야 하는 계약으로 성실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기행위를 실행한 후에도 그 과실과 사기를 무시하고 보험금 청구에 악의적인 허위나 사기가 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모두 상실한다"고 밝혔다.⁴²⁾ 담당 판사는 명쾌한 논리적 추론 방식으로 배심원단에게 설명하여, 의도적으로 과다청구가 전체 청구의 효력을 방해하고 악화시켜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수적인 거짓말 유형의 청구가 과다 청구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그 법적 결과는 과다 청구의 법적 결과와 일치하여 전체적으로 보상 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1930년 Wisenthal v. World Auxiliary Insurance Corpn Ltd 사건⁴³⁾이 되어서야 배심원단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한 사기행위이지만 부수적인 거짓말이 과다 청구가 아님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동안 영국의 보험사기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는 비교적 통일되었으며, 어떤 유형의 사기 청구도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2. MIA 1906에 적용

MIA 1906 규칙 시기의 특징은 사기적 청구의 다양한 법적 결과가 공존한다는 점인데, 이 시기에 존재하는 법적 결과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는 MIA 1906 최

41) Goulstone v. Royal Insurance Company, (1858) 1 F&F 276.

42) Britton v. The Royal Insurance Company, (1865) EngR 66.

43) Wisenthal v World Auxiliary Insurance Corpn Ltd, (1930) 38 L Rep 54.

대선의원칙에 따라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통법 규칙을 적용하여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셋째는 계약법 규칙에 따라 계약의 명시 또는 묵시 조항에 의해 처리되며,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경로는 모두 첫 번째 경로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열린 추가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MIA 1906은 해상보험의 기본 규칙을 심도 있고 철저하게 변경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원칙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사기적 청구에 관해서는 전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최대선의원칙은 처음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원칙으로 간주되었지만⁴⁴⁾, 이후의 논쟁과 탐색은 최대선의원칙을 계약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으므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영국 판사들은 사기적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MIA 1906 제17조 최대 성실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가 사기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자는 계약의 무효를 선언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지급된 유효한 청구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⁴⁵⁾ 대표적인 판례는 *The Mercandian Continent* 사건⁴⁶⁾인데, 이 사건에서 Longmore 판사는 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 중 하나가 사기적 보험금청구였다. 그러나 사기적 청구에 대한 선언으로 인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법적 결과는 때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단일적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선언은 사기적 청구가 발생하기 전 합법적으로 유효한 청구권도 소멸시키므로,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상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결과는 악의적으로 크게 청구하거나 부수적인 거짓말로 인한 사기적 청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다. 또한 이를 실제로 운용하는 데에는 높은 비용이 들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결과가 가끔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The Star Sea 사건⁴⁷⁾에서 세 명의 대법관은 사기적 청구에 대해서 MIA1906 제17조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적 결과에 대한 공정성

44) *Carter v.Boehm*, (1766)3 Burr 1905,1910 - 1912.

45) *Black King Shipping Corporation and Wayang S.A.v.Mark Ronald Massie (The Litsion Pride)*, [1985]1 Lloyd's Rep 437.

46) *K/s Merc-scandia Xxxix v Certain Lloyd's Underwriters and Others (The Mercandian Continent)*, [2001]EWCA Civ 1275.

47) *Manifest Shipping Company Limited v.Uni-Polaris Shipping Company Limited and Others (The Star Sea)*, [2001]UKHL 1.

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판결은 사기적 청구의 소장 및 증거 수집 기준 두 가지 측면에서 MIA 1906 제17조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이후 The Mercandian Continent 사건은 MIA 1906 제17조의 적용을 더욱 제한하며,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사기행위가 중요성과 인과 관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요 원칙으로는 첫째 사기적 청구는 보험자의 최종 책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 둘째 사기적 청구는 보험자가 계약을 종료할 정도로 심각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⁸⁾ 이러한 판례들은 MIA 1906 제17조의 제한사항을 개선하는 조치로,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가 불합리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동시에 영국 법원은 MIA 1906 제17조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사기적 청구를 규제하기 위해 보통법상 권리 박탈 규칙을 다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을 탐구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보통법상 권리 박탈 규칙은 사기적 청구 문제를 조정하는 데 예전부터 예시가 있으며, 관련 이론과 실무 판례도 적절한 기초가 있어, 재사용하는 데 큰 장애가 없었다.

The Aegon 사건⁴⁹⁾에서 Mance 판사는 사기적 청구가 MIA 1906 제17조의 조정 대상이 아닌 보통법상 권리 박탈 규칙의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사기적 청구에 직면했을 때 보험자가 MIA 1906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지만, 보통법상 권리 박탈 규칙에 따라 사기적 청구자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후 Axa General Insurance Ltd v. Gottlieb 사건⁵⁰⁾에서 Mance 대법관은 자신이 제시한 견해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 사건의 판결은 보험자가 사기적 청구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지만 사기적 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진실하고 유효한 청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보험계약의 효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즉, 보통법상 권리 박탈 규칙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법률은 유효한, 합의된, 진실하며 공공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계약 조항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

48) K/s Merc-scandia Xxxii v Certain Lloyd's Underwriters and Others (The Mercandian Continent),[2001]EWCA Civ 1275.

49) Agapitos v Agnew (The Aegeon),[2002]EWCA Civ 247,[2003]QB 556.

50) Axa General Insurance Ltd v.Gottlieb,[2005]EWCA Civ 112.

험계약자는 계약 조항 작성 과정에서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를 합의 할 수 있다. 만약 사기적 청구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계약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적절한 결과를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최대선의원칙을 사용하여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편이다. Orakpov. Barclays Insurance Services Co Ltd 사건⁵¹⁾에서 Hoffmann 판사는 사기적 청구 사건의 경우 계약법의 원칙이 최대선의원칙보다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보험사는 그들의 우위적 지위를 바탕으로 계약 중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 조항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양측 합의가 최종적으로 보험사의 면책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는 암시적인 계약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 조항이 이론적이거나 판례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법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계약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에 불확실성과 유연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영국에서는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사기적 청구는 더 이상 MIA1906 제17조에 따라 규제되어서는 안 되며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는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최종적으로 2015년 영국 보험법의 제정을 촉진시켰으며, 사기적 청구는 이제 새로운 법적 결과를 개정하게 되었다.

제2절 중국 해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

중국의 해상보험 사기 청구 체계 시스템은 영국법과 차이가 있고 직면하는 문제도 다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기 청구의 개념과 해상보험 사기 청구 입법 가치 방향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의 두 가지 법률과 관련되어 비교적 복잡하며, 법률 적용 문제와 규정의 합리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51) Orakpo v.Barclays Insurance Services Co Ltd,[1995]L.R.L.R.443:[1994]3 WLUK 404:[1994]C.L.C.373.

1. 해상법

중국 해상보험 관련 제도의 가장 주요한 법원은 해상법 제12장이다. 이 장은 해상보험의 법률 구조를 설정하고, 해상보험 사업 운영에 기본적인 규정과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장은 해상보험 사기적인 청구 규정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었으며 모든 사기 청구 상황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제242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특징 중 하나는 사기청구의 법적 결과 규정이 허위 사고를 발생시켜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가능한 사기행위, 예를 들어 사고를 조작하거나 청구를 과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이 법 조항의 간결함은 조작된 사기적 청구에 관한 결과 규정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이 조항은 보험사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지급된 보험금 처리, 계약의 유효성 등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실제 법률 적용 과정에서 허점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법률 시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상법이 해상보험 사기적인 청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불충분함을 드러내고, 현행 법률 제도의 개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에 대해 더 상세한 법률 조항을 마련하고, 사기행위가 발견된 사후 처리 조치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험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가능한 법적 책임 등의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2. 보험법

해상보험에서 사기적인 청구의 기타 중요한 경우 및 관련 법적 결과는 보험법 제182조 제56항의 관련 규정 “해상보험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보험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완벽한 규정을 제공하여 해상법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보험사와 피보험자에게 더욱

명확한 법률 지침을 제공한다.

보험법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27조에 나타나며, 다양한 사기행위 유형에 따라 각 유형의 사기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설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회사가 다양한 유형의 사기행위에 직면했을 때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보험업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7조 제1항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청구나 지급을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2항 "보험사기를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만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이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3항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 보험가입자 또는 수익자가 위조, 위조한 관련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고원인을 허위로 생성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들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항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그들은 환불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첫 번째 조항은 사고를 조작하는 형태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법적 구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을 날조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항은 사고를 조작하는 형태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법적 구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만들어 보험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도 불법행위이다. 세 번째 항은 영국법의 부대적 거짓말과 과장된 청구 두 가지 형태의 구제 방식을 합친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 보상을 신청할 때, 부대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 이것도 사기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항은 앞의 세 가지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비용의 처리 방법을 다룬다. 이에는 사기행위를 발견한 후 이미 지급된 보험금 처리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영국 법의 사기적인 청구 행위 분류 방식과 유사하게, 중국의 보험법은 사기적인 청구 규정도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상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상응하는 법적 구제를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규정은 피보험자가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사기적인 청구 행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기적 행위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전체 보험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보험업계의 안정적이고 정당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한국 해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가법" 제3조는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350조(횡령죄), 제351조(배임죄), 제355조(증권인지법 위반죄), 제356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유지 위반죄)에 의해 얻은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다양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제 범죄의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험범죄에 있어서는, 사기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가 매우 크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보험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자에게 높은 위험을 부여함으로써 경제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특가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은 어렵다.⁵²⁾

52) 박세민, "보험 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 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111호, 2009.151-152면.

2010년 2월 18일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고승덕 의원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 2를 위반한 자는 보험사기를 통해 얻거나 얻으려고 한 보험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얻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발의하였다. 이는 보험사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다.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할 경우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여 그 실효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⁵³⁾

2. 형법

보험사기는 그 구조적 특성상 '저위험 고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보다 강한 전파력을 가지며, 이로 인해 쉽게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즉, 보험사기는 비교적 감지되기 어려우며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험사기는 그 예방과 감시,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 문제이라고 볼 수 있다.⁵⁴⁾

보험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는 사기를 통해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제3자를 통해 재물을 전달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같은 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기가 발생한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를 근거로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기와는 달리 보험사기는 대부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며,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더욱이 보험회사는 회사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53) 옥태용, "보험사기 대응책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46면.

54) 김성태, "보험 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2001.6면.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보험사기행위는 고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험사기의 사회적 악영향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3. 보험업법

가. 보험사기 조사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 그리고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런 업무는 '보험사기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다.

나. 보험사기 행위의 금지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 그리고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 중개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기타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 두 가지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한다. 둘째,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한다. 특히 이 법은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 보험사기를 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보험계약법(상법제4편)

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로서 무효

한국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제644조) 이 경우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도 없다.⁵⁵⁾ 그러나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선의로 한 행동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8조) 또한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 한 사기를 보험기간 시기로 할 수 있는 소위 소급보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⁵⁶⁾(제643조)

또한 보험계약 전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을 규정한 제644조는 강행규정으로 보험계약 당사자 간 합의 등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⁵⁷⁾

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사행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⁵⁸⁾

이러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51조). 다만 단서를 통해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승낙이 이러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승낙 의사표시는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표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상 해지권과 더불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해 민법상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착오나 사기 모두 상법 해지권과 중

55)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2017), 231.

56) 양승규, 보험법 제2판 (서울: 삼지원,2005), 105.

57) 최병규, “가입 전 발병과 보험계약의 무효 법리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제56권 (2019): 111.

58) 이재복, 보험계약법, 서울 : 한출판, 2013 , 95.

첨적인 적용을 긍정한다. 59)

다. 사기로 인한 초과 또는 중복보험의 무효

현재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 중에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제 669 조 제4항, 제672조 제3항) 이러한 초과 중복보험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로 명시⁶⁰⁾ 하고 있다.

또한 제669조 제4항의 단서를 통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된 순간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우연성 결여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이때 고의나 중대과실의 주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포함되며, 이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과 추가 보험료 등에 의한 보상을 보험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절대적 면책사유이다.

또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피보험자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59) 대법원1991.12.27. 선고91다1165 판결.

60) 대법원2000. 1. 28. 선고99다50712판결.

제4절 비교연구

MIA 1906은 해상보험을 규제하는 영국 법이다. 이 법은 영국법을 규범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법 관할에서 대규모 채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해상보험을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통법 체계에서 준수되고 있으며, 세계 약 3/4 국가들의 국내 해상보험 입법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당시 해양 항해 기술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정보 소통의 불균형이 쉽게 발생하였고, 이는 해상 운송 사기와 해상보험 업무 공생 관계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보험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의회가 제정한 MIA 1906은 피보험자의 부당한 이익 획득으로부터 신생보험산업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법은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보험사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보험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MIA 1906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의 결핍이 점점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먼저 MIA 1906은 사기성 청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기성 청구와 관련된 규제 내용도 여러 조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다. 사기성 청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사들은 보편적으로 피보험자가 제시한 사기성 청구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MIA 1906 제17조를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MIA 1906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한 후(interim payment) 피보험자가 사기성 청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고가 복잡하거나 큰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구는 보험 책임 범위 내 속하는 요구라고 확인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MIA 1906은 단체 보험(group insurance)의 사기성 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단체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보험사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단체 성원은 보통 보험계약자가 아니며, 만약 어떤 단체 성원이 사기성 청구를 제기하면, 보험회사를 위한 구제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2015년 영국 보험법에서 보완되었다.

중국의 사기성 보험 청구 유형 구분은 영국 이론계에서 "순수 사기"의 구체적 형태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앞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보험사의 구제 방법은 영국 이론계 및 법률 실무의 견해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보험 사고를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기 청구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손실을 과장하여 청구하거나 사기행위를 일으켜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는 그 과장된 또는 허위 보고 부분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국 "해상 보험 계약"에 관한 해방법 제12장에 사기성 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는 너무 포괄적이고 간결하며 보충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법 사기 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는 확실히 더 체계적이다. MIA 1906에 비해 중국의 보험법에서는 사기성 청구 분류와 보험사 사기행위 형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나 2015년 영국 보험법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기성 청구에 대한 규제도 MIA 1906과 마찬가지로, 사기성 청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기성 청구와 관련된 규제 내용은 여러 조문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기만해위에 의한 계약해제와 고의사고 유발로 인한 사기죄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금지와 보험사기 조사 권한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로서 무효, 사기로 인한 초과 또는 중복보험의 무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와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에 대한 보험자 면책 유형을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 상법은 제4편에 보험법 규정이 있으며,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706조 제2항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중국 해방법 제12장 내용과 비슷하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 부족한 점은 광범위하고 단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주요국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법률을 조사 후 비교한 결과 한국 현행 법률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정의 확정, 단체 보험의 사기적 보험금 청구 법률 신설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제1절 영국 해상보험 사기제도의 분석

1. 영국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전통적인 정의

과거 영국 해상보험 분야에서는 사기적 청구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초기 영국 일부 해상보험 교재에서는 사기적 청구를 단순히 거절 이유로 간단히 소개하였다.⁶¹⁾ 오랫동안 영국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는 영국 사법체계의 특성상 실제 재판을 통해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실제주의적 정의 방법의 최대 문제는 사례들을 기반으로 정의되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기적 청구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 정의되어야 한다. 사기적 청구의 주체, 사기적 청구의 주관적 상태, 그리고 사기적 청구의 행위 유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앞의 두 가지 요소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 번째 요소에 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주체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사기이므로, 해상보험 사기 청구 주체 정의는 보험사기 주체에 대한 연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 주요 요건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보험사기 주체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수익자만을 의미하며, 즉 피보험자의 부당한 이익이 목적인 사기만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 이 관점은 역사적 해석에서 보험사기를 보험산업의 특수 용어로서 탄생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사기행위로 해석하였다. 이에 좁은 의미에 해당하는 보험사기이자 전통적인 보험사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보험사기 주체에 보험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이러한 관점은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라고도 불리며, 그 중에서도 보험자의 보험사

61) Johanna Hjalmarsso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legal definition and judicial consequences. University of Southampton, Faculty of Business Law and Art, Doctoral Thesis, 2016, p. 159.

기는 주로 보험자의 불법 영업형 보험사기 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를 의미한다.⁶²⁾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특수성은 청구라는 단어가 보험 청구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는 배상 청구를 처리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험자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에서 보험자는 행위 대상과 피해자의 역할로만 나타나므로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는 보험자를 제외하고 주체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계약인 사기를 의미한다.

나.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주관상태

영국 학계에서는 사기(Fraud)의 정의를 적용하여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주관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Derry v. Peek 사건에서는 영국 상급법원(House of Lords)이 사기를 실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진술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술한 경우, 진술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경우, 진술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경솔한 행동일 경우 이 세 가지 심리 상태 중 하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⁶³⁾ 이 정의를 보험 분야에 적용할 때, 사기적 보험금청구는 세 가지 주관적인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피보험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청구하여 보험자를 속인 경우, 둘째, 피보험자가 청구 사실의 진위에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청구한 경우, 셋째, 피보험자가 청구 사실 진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경솔하게 청구한 경우 그 청구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⁶⁴⁾

대륙법계 이론에 이 정의 방법을 접목시키면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주관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대륙법 이론에 따르면 민사 사기 행위상 사기인은 사기행위에 고의가 있어야하며, 사기의 고의 유형으로는 ① 사기 행위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오도하게 만들고, ② 상대방이 사기 행위자의 오도에 따라 특정 결과를 행하도록 하는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의적인 형태에 대한 형사 사기 요건과

62)中国保监会：《中国保监会关于印发〈关于加强反保险欺诈工作的指导意见〉的通知》，
<http://circ.gov.cn/tabid/5171/Infoid/219312/Default.aspx>

63) Derry v. Peek, (1889)14 App. Cas. 337, 374.

64) Baris Soyer, Continuing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still alive?,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03, p.44.

는 달리 민사 사기 행위의 주관적 상태는 직접적인 고의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인 고의 상황도 포함될 수 있다. 민사 사기의 간접적인 고의는 주로 사기인이 특정 중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여 사기 사실을 오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⁶⁵⁾

따라서 대륙법 이론에 따르면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주관적 상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릴 수 있는 직접적 고의 또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상황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만드는 직접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 방법은 영국 보험법에서 결정된 사기적 상태의 세 가지 유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영국 보험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직접적인 고의적 사기에 해당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본질적으로 간접적인 고의적 사기로 볼 수 있다.

다.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행위 유형

앞서 언급한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주관적 상태를 바탕으로 영국의 연구자들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의 4가지 기본 행동 유형을 요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기적 보험금 청구의 정의에 대한 쟁점은 결국 이 4가지 기본 행동 유형으로 귀결되었다. 처음 두 가지 행동 유형은 일반적으로 사기적 보험금 청구로 분류되며, 후자는 각각 과다 보험금 청구 유형 및 부수적인 거짓말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행동 유형은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얻기 위해 허위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즉,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금 청구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며 사기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두 번째 행동 유형은 피보험자나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보험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사기적인 행동으로 인정되며, 전통적인 사기유형 중 하나이다.

65) 盖克清：《论欺诈行为的法律分野》，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2007年，第26页。

세 번째 행동 유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과장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식별 기준은 비교적 모호하며 한편 피보험자가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과장해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자와 보상액 협상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얻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한편, 과한 액수 기준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보험금 과다청구가 사기적 보험금 청구 규칙 의미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수도 있으며 과장된 보험금 청구는 반드시 실질적이어야 한다. 즉, 사기적 의도를 가진 과장이 필요하고, 금액상 보험금청구의 정당한 부분과는 별도의 과다청구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행동 유형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부수적인 거짓말(Collateral Lies)을 사용하는 것이다. 부수적인 거짓말은 이전에 사기적 수단(Fraudulent Device)으로 불렸다. 이러한 행동 유형은 피보험자가 제기한 청구가 명백한 사실은 맞지만 보상을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청구를 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영국 항소법원의 Mance 대법관이 판단한 The Aegon 사건⁶⁶⁾에서 모든 부수적인 거짓 진술이 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보험자는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해야 한다. 첫째, 피보험자의 거짓말은 청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둘 사이에 일정한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피보험자는 보상 가능성이나 소송 성공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셋째, 거짓말은 허위사실이 배상받을 가능성이나 소송 성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 증명 방식이 반대로 뒤집혔다.

위에서 언급한 사기적 보험금 청구 두 번째와 세 번째 주관적 상태와 관련해 영국법 전통적인 이론은 과장된 보험금청구 또는 거짓말을 덧붙인 보험금청구 이 두 가지 행동유형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 실제로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을 제거한 후 보험목적물이 보험 위험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해 청구를 제기한 후 보험자 사후 확인까지 거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법에 따라 영국 법원은 피보험자의 무모한 행동도 사기적 청구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⁶⁷⁾

사기적 보험금 청구 제도는 장기간 발전을 거쳐 특수한 단계에 이르렀고, 주체 확인, 주관적 상태 요건 등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사기적 보험금 청구 정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위에서 언급한 허위 보험금 청구, 과다 보험금 청구

66) Agapitos v Agnew (The Aegeon),[2002]EWCA Civ 247,[2003]QB 556.

67) Bucks Printing Press Ltd v.Prudential Assurance Co.,(1994)3 Re LR 219.

및 부수적인 거짓말과 같은 사기적 보험금 청구 행위 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판례인 'The DC Merwestone' 사례는 이러한 정의에 대한 최신 답변으로 볼 수 있다.

2. The DC Merwestone

영국 대법원은 The DC Merwestone 사건에서 사기적 청구의 정의 방식과 구체적인 정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영국 판례법 체계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최고법원 판례는 단계적으로 어떤 행위 형태가 사기적 청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종결시키고, 사기적 청구의 경계를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가. 사실관계

DC Merwestone호(이하 ‘본선’이라 한다)의 선주인 원고는 피고·보험회사 간에 그 선박의 선체 및 기관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여 1년간의 기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년 1월 28일 또는 29일 밤에 고철을 싣고 있는 DC Merwestone호 화물선은 동절기에 리투아니아에 도착했다. 선박이 출항한 후, 원래는 밀봉되어야 하는 기관실 케이블 덕트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해수가 기관실에서 선수부와 선미부에 위치한 선저 이중저(duct keel) 터널로 유입되었다. 기관실과 이중저 터널 간의 수밀성 결함으로 인해 결국 기관실도 침수되었다. 선장은 엔지니어에게 배수를 명령했지만, 기관실 침수에 대해 배수펌프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엔진이 침수되었다. 결과적으로, 1월 30일에 주요 엔진이 완전히 침수되어 작동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엔진을 교체해야 했으며, 약 320만 유로의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보험금 청구 협상 단계에서 선주의 담당 임원이 "침수를 발견한 1월 28일 정오에 오수침수 경보(bilge alarm)가 울렸지만 악천후 때문에 조사하거나 누수를 처리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들은 후, 이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 선장이 허위 사실을 포함한 보고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는 사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MIA, Art.39(5)에 따라 원고가 감항능력 담보 의무에 위반했다는 피고 항변에 대해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자의 책임이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Popplewell 판사는 "선원이 오수 침수 경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320만 유로의 청구는 정당하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계획적이지 않은 거짓말이며, 원래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었던 320만 유로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보인다. 청구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례인 Agapitos & Anor v. Agnew & Ors (The Aegeon)(2002)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기적 보험금 청구에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판사는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원고의 항소에 대해, Clarke 경은 사기적인 수단 사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Mance 판사 설명을 따르면서 사기적인 수단 사용은 사기적 보험금 청구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적법한 청구를 지지하기 위함일지라도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한 보험금 청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Clarke 경은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원칙이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원칙과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인 최대 선의(utmost good faith) 원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자는 모든 보험금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95%의 청구가 합법적이더라도 사기적인 수단의 사용에 따라 모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Clarke 경의 주장에 따르면, 사기적인 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결과적으로 권리가 없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에 관한 법원의 원칙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사실을 진술하는 것보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다 쉽게 또는 빠르게 받기 위한 행위를 사기적인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larke 경은 또한 법률이 보험금 청구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보상의 근거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자가 사기를 성공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는 상황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Clarke 경은 사기적인 수단의 이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일부 청구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금 청구나 소송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때만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공중질서에 따른 규율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와 사기적인 수단의 사용을 모두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원칙이 불성실한 청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과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대되고 있다.⁶⁸⁾

나. 판결내용

2016년 7월 20일 Sumption 경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해당 보험금 청구 권리가 실권되며, 보험자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영국 보험법의 엄격한 원칙이 언급하였다. 이 원칙은 보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피보험자는 보험자와의 거래에서 최대한의 성실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이 소송의 경우, 본선이 화물인 고철을 적재하고 발틱해를 항해하는 도중, 항해 중인 선박이 기관실 침수로 인해 주기관이 침수되어 항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주기관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거짓말이 발견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의 거짓말이 보험금 청구 권리의 실권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8) 한낙현. (2022).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에서의 보험금부당청구의 취급에 관한 연구: DC Merwestone호 사건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18(2), 347-370.

선주가 선박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는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1) 승조원이 비상용 소화 양수기의 해수 취수 전을 닫지 않은 과실, (2) 정기적인 수리(검사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방수 격벽을 밀폐하지 않은 수리업자의 과실, 그리고 (3) 기관실 양수기의 결합으로 인해 충분한 속도로 배수를 할 수 없었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심 판사는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손해는 보험 계약에 포함된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해 초래되었다. 손해액에 대한 분쟁은 없었지만,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박 관리 대리점의 책임자인 Kornet는 사실을 과장하여 보고하였다. 그는 승조원이 오수 침수 경보에 대한 대응이 늦어서 기관실이 물에 잠겼다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보험회사에 승조원으로부터의 보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승조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는 없었다. 이러한 행동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사기적인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정보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Kornet의 행동은 이러한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Kornet의 거짓말은 보험회사의 지급 지연에 대한 불만과 보험회사가 기관실의 양수기와 격벽 상태를 이용하여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한 선주의 우려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필요하지 않았고 기관실의 양수기와 격벽 상태는 보험회사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Kornet의 거짓말을 알게 된 이후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거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과거 판례에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거짓말은 해당 청구를 무효로 만들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사기적 과다청구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즉, 피보험자가 순수하게 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지만, 그 금액을 고의적으로 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이상을 회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 경우에도, Kornet의 행동은 손해액을 과장하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기적인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보험 계약의 근본적인

원칙인 최대 선의 원칙에 위반되며,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과거의 법원칙과는 약간 다른 상황이 있다. 기존 법원칙은 과다 청구에 대한 거짓말을 한 피보험자가 청구액 전체를 잃게 되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보험금 청구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법은 과다 청구에 대한 거짓말이 불성실한 청구로 간주되며, 그 결과로 보험금 청구 전체가 실권되는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본선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체는 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Korner의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는 부차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Agapitos & Anor v. Agnew & Ors (The Aegeon)* (2002) 사건에서의 항소법원의 판결은 사기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청구가 전부 실권되는 것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고 이 판결은 후속 판례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영국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될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이전의 판례를 따르거나 새로운 판례를 확립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청구와 관련된 거짓말에 대한 법적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1심의 판사인 Popplewell은 엄격한 법원칙에 반대했지만, 그는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더 엄격해졌다. 항소법원 판사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유익하고 가치 있는 법원 판례의 해석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4 대 1의 다수결로 상고를 인정했다. 한편 Mance 경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기와 청구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없는 한, 사기를 이유로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실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는 보험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목적일지라도 거짓말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짓말이 보험회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가 실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성실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보험자의 성실함을 권장하는 목적이 불성실함이 보험회사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원칙을 정당화하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부정청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관계한 거짓말을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각하하는 법원칙은 보험자의 정당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보험자의 성실한 청구가 부정적인 행위에 의해 실권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졌고 이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례를 크게 바꾸는 중요한 판결로,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대법원 판결내용 분석

사기적 청구의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사기적 청구 제도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사례는 대법원 판례의 형태로 사기적 청구의 기본 경계를 정리하고 확정하였으며, 사기 수단과 정상 청구 수단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위치한 사기적 전략을 부수적 거짓말로 재정의하고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기적 청구 규칙의 규제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1) 정확한 정의 기준 제시

The DC Merwestone 사건은 영국 최고법원에서 처음으로 부수적인 거짓말 문제를 다루며 사기적 청구에 대한 안정된 정의 기준을 제시할 기회였다. 이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례로서 매우 높은 판례법 적용력을 가지고 있다. Sumption 대법관의 논리적인 접근은 부수적인 거짓말의 정의와 사기적 청구와 부수적인 거짓말의 경계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으로부터 파생되었다. 비록 이 판결은 개별 사건을 근거로 하지만, Sumption 대법관의 논리 과정은 사기적 청구와 부수적인 거짓말의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급 법원이 이 판결을 무시하고 부수적인 거짓말을 다시 사기적 청구의 범위로 복귀시키기 어렵다. 정책 지향과 가치 판단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적절한 상소 사건이 최고법원 대법관들 앞에 제출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이 사기적 청구의 경계에 대한 규정을 일정 동안 판례법으로서 각급 법원의 판결을 결정할 것이다.

2) 사기적 청구의 기본적인 경계선 구분

이 판결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판례의 형태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공백을 채우고 사기적 청구의 기본 경계를 그리며, 장기간 사기적 청구의 정의 문제에 대

한 논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에서 제시한 사기적 청구 확인의 방식은 의심스러운 사기적 청구의 경우를 먼저 청구 자체의 타당성에 따라 거짓 청구와 정당한 근거가 있는 청구로 구분하고, 거짓 청구를 직접 사기적 청구로 인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청구 사기 부분의 성격에 따라 정당한 근거가 있는 청구를 과다 청구와 부수적 거짓말을 사용한 청구로 구분하며, 거짓말을 통해 얻지 못할 이익을 얻으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즉 거짓말과 배상을 받을 가능성(Recoverability) 간의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배상을 받은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과다 청구로 인정하여 사기적 청구 규칙을 적용하며 배상을 받은 가능성과 무관한 경우 부수적 거짓말을 사용한 청구로 사기적 청구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사기적 청구의 경계가 명확해진다.

물론, 이 판결의 이유에는 이론적으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부수적인 거짓말을 사용하여 감소시킨 입증 부담과 얻은 시간적 이익이 왜 그들이 받지 못할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판결에서 부족하다. 또한, 부수적인 거짓말을 사용한 청구의 법적 결과에 대한 공백이 비례 원칙과 합리성 원칙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판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영국 보험 산업의 미래 발전, 민사 및 상업 법규의 통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반 위에서, 이 판결은 사기적 청구의 정의에 대해 논리적인 일관성과 실행력이 높은 규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높은 이론적 가치와 실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보험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 재검토

MIA 1906은 업계 발전을 촉진하고 해상보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지향을 선택했다. 이 정책 지향의 중요한 척도는 최대선의원칙의 확립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상황은 100년 전과 매우 다르며, 보험 업계를 보호하는 정책 지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사건 판결은 최대선의원칙을 포기하고, 비례 원칙과 합리성 원칙에 따라 부수적 거짓말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기적 청구 규칙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다. Sumption 대법원 판사는 "The Star Sea" 사건에서 Hobhose 판사의 최대선의원칙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였으며, "후 계약 단계에서 최대선의원칙의 적용은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The DC Merwestone 사건의 판결은 사기적

청구의 정의에서 최대선의원칙의 역할을 재고하고, 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지향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보험 업계 보호 정책 지향이 현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기적 청구의 정의 규칙은 보험계약 양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잡는 정책 지향과 비례 원칙에 따라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3. 영국 해상보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새로운 법적 쟁점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에 고찰을 바탕으로, 영국의 입법위원회는 2015년 영국 보험법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를 새로운 규정의 입법 개정을 완료하였다. 2015년 영국 보험법의 사기 청구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비율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를 통합하고 사기 청구에 대한 다양한 법적 결과가 공존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가. 최대선의원칙

사기적 청구를 규제하기 위해 최대선의원칙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최대선의원칙이 사기적인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으로 항상 사용되었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법적 결과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계약 후 최대선의원칙과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보험법 제14조 제3항 a호는 MIA 1906의 최대선의원칙을 개정하여 MIA 1906 제17조 후반 "보험계약 중 어느 한쪽이 최대선의원칙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해상보험에서 최대선의원칙의 지위를 직접 변경하였다. 최대선의원칙은 과거의 명목 원칙과 실제 규칙에서 해상보험법의 지도적 기본 원칙으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의 통일 및 수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계약 이행 중 최대선의와 사기적 청구의 분리로 인해 법원과 보험계약 당사자들은 사기적 청구를 더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침 원칙과 법적 개념에서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비례 원칙이 사기적 청구 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지침 원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기적 청구에 대한 통일된 법적 결과

최대선의원칙의 개정은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법적 결과에 대한 장벽을 제거했으며 법률 위원회는 비례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경은 2015년 보험법 제12조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고,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리를 갖게 되었다. (1)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기초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회수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통지를 통해 사기적 청구가 제기된 시점부터 보험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즉, 보험자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구제로 세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다. 첫째, 배상을 거부할 권리, 둘째, 지급된 보험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셋째, 보험계약의 종료권이 있다. 2015 보험법은 계약 해지가 사기적 청구 제기 시점으로 소급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과거 단순한 초기 해지와 달리 사기적 청구가 발생하기 전 정당한 청구에 대한 반환 여부 문제 역시 해결하였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금액의 추심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청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기적 청구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며, 피보험자에게 사기적 청구에서 정당한 부분에 대한 보상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로써 새로운 법에서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이 조항은 피보험자의 사기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 요소를 유지하였다.

영국 2015년 보험법이 제정 이전에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통일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동안 MIA 1906 제17조에 기초한 법적 결과, 일반법에 따라 권리 박탈에 기초한 법적 결과, 보험계약 조항에 기초한 법적 결과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적 청구 법적 결과가 존재하였다. 또한, 다양한 행동 유형에 대한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구체적인 법적 결과는 사례 균형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정되어야 했다. 이로 인해 판사들이 사기적 청구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보험 계약 당사자들은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2015년 보험법은 통일된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를 제시하여 명확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동 유형의 사기적 청구에 대해 단일한 법적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사기적 청구 처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으며, 과거 다양한 행위 유형의 사기적 청구에 대

해 다른 법적 결과를 적용하던 전통적 방식을 대체하였다.⁶⁹⁾ 2015년 영국의 보험법은 사기적 청구 처리(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라는 제목으로 제12조를 명명하여 다양한 행동 유형의 사기적 청구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의 선택과 측정에 대한 법원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를 통일되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다. 사기적 청구에서의 선지급 반환 문제의 명확화

영국 2015년 보험법은 사기적 청구에 대한 선지급 보험금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험사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피보험자로부터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 2015년 보험법 시행 이전에는 선지급 처리 방식이 주로 실무 판례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고전적 사례는 주로 The Aegeon 건, Axa General Insurance Ltd v. Gottlieb 건 및 The Litsion Pride 건 등이 있다. 이 몇 가지 사례에서 판사들은 청구권의 근거, 도덕적 위험, 선의원칙, 그리고 영국 일반법규칙 등의 측면에서 사기적 청구에 대한 선지급 금액 추심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2015년 보험법은 이러한 판례들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표현한 형식으로 정식화한 것이다. 영국 2015년 보험법은 "선지급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국 법원의 판례와 법적 근거를 존중하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가 일부 선지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사기적인 행위를 한 피보험자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져왔다.

라. 단체 보험 사기적인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 탐색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단체보험의 일부 피보험자에 대한 사기 처리 방식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법 제13조는 단체 보험이 보험사와 특정 계약자간의 약정으로 정의하며, 이는 하나 이상의 비보험 계약 당사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단체 보험에서 개별 피보험자가 사기적 청구를 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결과와 관련 구제 방법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일부 피보험자에게 해당 법

69) 初北平.海上保險法[M].北京：法律出版社，2020：35.

제12조를 적용할 때, 단체 보험 계약은 보험사와 각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정된다. 즉, 단체 보험의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는 사기적 청구를 제기한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피보험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체 보험 및 단체 보험 내의 사기적 청구 문제는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단체 보험은 하나의 보험증권을 공유하지만 여러 피보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피보험자의 부당한 행위 전체 보험증서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단체 보험 자체의 존재가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생명보험 분야에서 단체 보험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해상보험 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은 보험계약이 단체 보험 형태로 체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보험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양측에서 공동으로 요구되는 사안이 되었다.

2015년 영국의 보험법은 단체 보험 내 사기적 청구 문제를 법적 규제의 범위에 인정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탐구했다. 이는 보험사가 단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단체 보험의 발전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했다. 한편으로는 약자인 단체 보험 피보험자들을 보호하여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증권의 유효성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해주는 동시에 이를 통해 단체 보험이라는 보험 형태를 보호하였다.

제2절 영국 개정 보험법상 중국 해상보험 규정에 시사점

중국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 규정은 일정한 선진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개념 정의, 규칙 연계 및 규정의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중국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 입법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1. 사기적 보험금청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족

사기적 청구제도에 대해 중국은 입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기적 청구제도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이론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지 않고 있

다. 그 이유는 법적 실무에서 어떤 상황이 사기적 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정량화된 기준이 오랜 시간 동안 사건 판결을 통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⁷⁰⁾. 사기적 청구제도의 정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지 여부는 사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실용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여긴다. 그로 인해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흔히 사용되는 제도로서 사기적 청구제도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는 사기적 손해배상 제도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으며 장기간의 발전을 거쳐 사기적 청구의 분류는 대부분의 학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보험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살펴보면 사기적 청구제도에 대한 규정은 '순수 사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경솔에 대해서는 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사기적 청구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사기적 청구제도의 의미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경솔과 부주의 두 가지 상황이 사기적 청구제도의 구제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결여로 인해 사법 실무에서 정리된 경험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매우 특별한 사례를 처리할 때 사기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법 관련 조항을 적용할지 아니면 계약법에서 계약 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적용할지 선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사건의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오랜 동안 발전한 비교적 성숙한 제도로서, 사기적 청구제도는 이론적으로보다 완벽한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기적 청구제도에 명확한 분류가 있지만 명확하지 않으며, 한 제도는 기본 이론이 완비한 기반 위에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사기적 청구에 대한 제도는 많은 개선 제안이 사법 실무에서 도출되어 결국 확립되었다. 그러나 사법 실무에 비해 이 제도의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 이 제도를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강화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기적 청구제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⁷¹⁾.

70)程梦然：《海上保险欺诈性索赔法律问题研究》，大连海事大学硕士学位论文，2016年。

71)陈丽云：《从最大诚信原则的变化看海上保险法的价值取向》，大连海事大学硕士学位论文，2009

2. 해상법과 보험법의 사기적 청구에 대한 규정

중국의 해상법과 보험법은 사기적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 보험법 제182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92조⁷²⁾에 따르면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는 해상법의 규정에 먼저 적용되며, 해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는 먼저 해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해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해상법은 해상보험 사고를 위장한 청구 유형에 대한 법적 결과만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다른 유형의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 규칙을 두 법률에 분산시키고 있다. 이 법적 상황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 규정의 체계화를 어렵게 하며, 사법 실무에서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고를 날조한 청구와 허위 청구라는 두 가지 형태의 해상보험 사기 청구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으며 법적 결과도 유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고를 날조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시킬 수 없다. 이러한 법적 결과의 차이와 불일치는 분명히 비합리적이다. 가능한 해석 중 하나는 해상법 제242조가 MIA 1906의 제외 위험 조항인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어떠한 손실도 보상하지 않는다"를 참조했지만 해당 조항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 제외의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해상법 제242조의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사기적 청구 분야에 개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험법의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유발한 청구 규정을 해상보험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年。

72)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92조 "동일한 기구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규칙, 지방규칙, 자치규칙 및 단행규칙, 규정의 경우,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 참조.

3. 해상보험에서 과다 청구의 법적 결과에 대한 부적합한 규정

중국법은 과다 청구 유형의 법적 결과가 너무 관대하여 사기 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의 보험법은 과다 청구와 부수적인 거짓말 청구를 조합하여 보험사가 허위 청구 부분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는 허위로 청구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지만, 여전히 실제 청구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의도적이지만 악의가 없는 부수적인 거짓말을 사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짓말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결과의 적용은 비례 원칙에 부합하며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결과가 적절하게 완화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절한 처벌은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공정성과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⁷³⁾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률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과다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는 너무 관대하고 과다청구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자신이 얻을 권리가 없는 이익을 주장하여 일단 성공하면 상당한 부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중국의 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는 이 사고 보상금만 잃게 되며, 그 자체의 이익에는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청구가 실패한 경우에도 그들은 원래 받을 자격이 있는 이익을 잃지 않게 된다.⁷⁴⁾

과다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와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중국 보험법의 정책 경향은 일반 보험과 일치하지만, 이러한 법적 결과가 해상보험 분야에서는 다소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해상보험 시장은 국제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전 세계 시장이며, 참여하는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상업 주체이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 분야에서의 법적 결과는 중국 국내 해상 보험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보험자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해상보험 당사자들의 능력과 지위는 일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하며, 보험자가 지나치게 강한 위치나 전문성을 가진 경우

73)葛延珉：《海上保险法最大诚信原则研究》，大连海事大学博士学位论文，2005年。

74)葛淑梅：《英国保险法对欺诈性索赔的法律规制及对我国的立法启示》，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2019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해상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그에 상응하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법이 해상보험에서 과다 청구 유형의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 규정이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4. 단체 보험에서 사기적 청구에 대한 구제 방안 부족

중국의 단체 보험 발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편이며 1980년 이후 보험업무가 재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체 보험은 계획경제 시대에 주목받았으며 그 이후 쇠퇴기를 겪었지만, 최근 10년 동안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단체 보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은 보험법에서 사기적인 구제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구제 규칙을 제정했지만,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중국 법에서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지금까지, 중국 법은 단체 보험의 법률 규정 제정에서 매우 거칠다. 중국 현행의 보험법은 단체 보험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안에서 단체 보험의 보험이익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보험 업계의 전체 법률 규정을 가로지르면, 단체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보험감독원이 2005년 발표한 '단체 보험 운영 행위 관련 질문에 대한 통지'일 뿐이다. 이 외에는 단체 보험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상응하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체 보험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이며 단체 보험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강화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 법이 단체 보험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해 부족한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단체 보험에서의 사기적인 구제 법률 규정도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 보험감독원의 통지는 법적 규칙으로서의 효력이 비교적 낮으며, 통지 내용도 단체 보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그친다. 또한, 이 통지 전문은 9개의 항목만으로, 단체 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체 보험의 정의, 가입 조건, 보험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가장 긴 글은 보험회사가 단체 보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업해야 하는지의 규정이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 당사자, 보상 대상자 등과 관련된 사람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통지 규정은 매우 간단하며 단체 보험을 규정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이 고시 제1조에 따르면 단체보험은 보험자가 5인 이상의 특정 단체 구성원(구성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 형태로 정의되며, 단체 정기 생명보험, 단체 종신 생명보험, 단체 연금보험, 단체 건강보험, 단체 상해보험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보험감독원은 단체보험을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단체 보험은 주로 생명보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왔으며, 단체 보험은 선박 건조 등의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통지는 단체 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고시는 2005년에 발표되어 현재까지 10여 년이 지났고 단체 보험 업무에 큰 변화가 발생하여 이 고시는 현대 단체 보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법률 조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문법 국가다. 현대 보험 업계에서는 단체 보험의 업무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단체 보험의 업무 종류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단체보험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단체 보험 분쟁이 증가하고 복잡해진 배경에서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해 판사들은 관련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유사한 사례와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사법적 권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불공평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 보험에 대한 법적 규정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단체 보험에서는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해 단체 보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기적 청구는 단체 보험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다. 현재 일부 법관은 해당 보험법의 개인 사기적 청구 규정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기적 청구와 무관한 관련자에게 불공평한 처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 보험 분야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기적 청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 규정도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절 현행 한·중 법률의 개선 방향

1. 현행 중국 법률의 개선 방향

영국 해상보험의 사기적 청구에 대한 새로운 규칙 구축의 핵심은 사기 억제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비례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보험 사기 청구 정의 규칙을 개정하거나 법적 결과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국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
 국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규칙 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에 주의를 기
 울어야 하며, 개혁 작업은 항상 해상보험 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영국의 새로운 규칙 개혁 방향과 입법 방식을 바탕으로, 본문은
 중국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정의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제도 자체는 100년 이상 발전해 왔지만 사기적 청
 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법률에서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규정을 특정한 정의를 보류하며 법적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으
 로 채택하고 있다. 사기적 보험 청구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미 언급
 했으며, 이제 사기적 보험 청구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제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기적 청구제도는 매우 실용적이며, 일종의 영미법 계열에서 유추적 논
 리에 기반한 판례 법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기적 청구제도가 영미법 계열의
 이전 사례들을 종합하여 도출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높은 실
 용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더 잘 적응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법체계는 대륙법 계통을 따르며 연
 역법을 사용하여 법률적 추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제도를
 연구할 때, 영국의 판례법 제도의 성과를 인용하면서 중국의 법학적 이점을 종합

하여 사기적 청구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판례법 제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연역법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사기'의 개념부터 체계적인 사기적 청구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사기적 청구를 정의할 때,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는 해상법 제도의 일부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정의는 다른 해상법 제도와 호환되어야 하며, 이론적인 추론과 연구는 궁극적으로 실제 상황과 일치해야 한다.

나. 해상보험과 일반보험의 사기적 청구 규칙의 관계

중국의 해상보험 법규와 일반보험 법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주로 중국의 입법 과정에서 해상보험과 일반보험 입법의 참고 대상이 다른 것이 원인이다. 해상보험 입법은 주로 영국의 MIA 1906을 참고하여 사기적 청구제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와 일반보험 사기적 청구 규칙 사이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법 제242조의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와 일반보험 사기적 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양자를 완전히 조화시키거나 해상법에서 해상보험에 관한 내용에 영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를 확립할 수 있다. 또한 해상법 제242조의 존재는 사기적 청구 처리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보험의 경쟁시장은 국제시장이지만 일반보험은 주로 국내시장을 적용하며 해상보험의 주요 참여자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체이지만 일반보험이 직면한 대다수는 보험 전문 지식과 협상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주 고객층으로 보인다. 이는 두 보험 분야가 업계 전통과 운영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법적 규제 방식도 각각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보험의 가치 지향(즉, 피보험자의 이익 보호)을 해상보험 분야에 쉽게 확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국제 해상보험 시장의 현황과 국내 국정을 고려하여 해상보험과 일반보험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절함으로써 해상보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 입법과 일반

보험 사기적 청구 입법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해상보험 법률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개선하여 시장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보험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에 대한 단일 독립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데, 첫째, 중국 보험법의 일반 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규정 방식을 따라 행동 유형에 따라 다른 법적 결과를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서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다양한 행동 유형에 대한 법적 결과를 통합할 수 있다.

다. 사기적 청구 규제 법안의 정책 방향 결정

영국의 사기적 청구 새로운 체제의 등장은 현시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보험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새로운 사기 청구 체제의 지도 원칙 전환은 최대선의원칙에서 비례 원칙으로 전환되었으며, 지도 원칙 변경의 근원은 사법 정책의 변화이며, 사법 정책의 변화는 영국 보험 산업의 발전과 영국 해상보험 중심지의 안정적 위치 때문이다. 중국은 해운 강국으로 발전하고 해상보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영국의 경험을 배우고 해상보험의 사법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해상보험 법규는 업계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의 현재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제도는 일반보험과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우호적이고 보험자에게는 엄격한 편이다. 이는 해상보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정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기적 보험금청구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비례원칙과 피보험자 보호지향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 정책은 해상보험의 특수성과 국제시장의 동향에 따라 적절하게 보험사를 우대하여 해상보험 회사가 국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해상보험 회사가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보험 자금이 중국에 들어와 중국해상 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이는 중국해상 보험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법 정책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해상보험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 규정 마련

중국은 보험법에서 단체 보험에서 사기적 청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 실무에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흔히 발생하는데, 단체 보험에서 사기적 청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단체 보험에서 사기적 청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제13조는 사기 행위를 실시한 개인에게 처벌을 부과하면서 다른 피보험자나 관련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중국의 보험법과 입법 목적 및 입법 기술 면에서 충돌하지 않으며 중국 법이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제13조의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 규정을 참조하여 중국 보험법의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 문제에 대한 입법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기적 청구 후에 보험인이 어떻게 구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보험법에서 선 지급 부분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다. 반면에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제13조는 구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개념은 제12조와 유사하므로 중국은 사기적 청구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보험법 제27조에 규정된 구제 수단을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단체 보험을 생명보험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단체 보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 자의 요구사항과 현대적인 단체 보험 발전 현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실, 대량의 재산에 대한 단체 보험은 매우 일반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를 규제할 때에는 재산 보험에서 단체 보험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재산 보험 내의 단체 보험도 이 조항의 관할 범위에 포함하여 다양한 보험 유형의 피보험자나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현행 한국 법률의 개선 방향

영미법계와 한국 법계는 경제 발전 수준과 정치 문화 전통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법률 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존재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어떤 법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영국은 국가 상황이 다르더라도 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는 모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영국과 한국은 보험 사기적 청구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처리할 때, 그 사법 목적이 유사하며, 보험계약 당사자 양측의 이익을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는데 헌신하며, 법적 행위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고, 보험 업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고자 한다.

영국은 세계 해상보험법의 발전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 사기적 청구에 관한 입법 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동시에 영국은 2015년 보험법을 현대 보험 산업의 발전 요구와 결합하여 1906 MIA에 큰 변화를 개정하였다.

이번 영국 새로운 보험법 개혁에 대해 한국의 구체적인 입법 현황과 영국의 새로운 보험법 개혁 조치를 결합하여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험업계의 건강한 장기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국의 2015년 보험법 개정 규정의 의의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 보험사기 정의 재정립 및 대상 범위 확대

1) 관련 조항 및 내용

2008년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됨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 2에 보험사기 금지 의무항목이 통과되었다. 이는 본래 보험사기의 정의·금지 의무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험사기 금지 의무’만 통과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민영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자'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보험업법 제4조 상의 보험자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인영보험자, 외국인영보험자국내지점을 말한다.

2) 개선 방향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 사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함께 보험금 청구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험금 청구 전 단계에서의 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보험 사기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다양한 보험사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전처럼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체국 보험 및 다른 공영보험인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보험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먼저 보험금 청구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를 보완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를 영국의 사기법 제2조 또는 중국 형법 제198조와 같이 세부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조문 신설이 아닌 보완을 통해 보험금 청구 전 단계의 보험사기 행위의 처벌 근거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자'를 보험업법상 민영 보험자와 더불어 유사한 각종 공제기관,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공영 보험 운영 기관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단체 보험 사기적 보험사기에 관한 제도 설립

1) 관련 내용 및 조항

한국에서는 1968년에 국민저축조합법의 시행으로 함께 반강제적인 단체 보험이

판매되었다. 그 이후에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장려하기 위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 1977년에 도입되었고, 이는 단체정기보험과 함께 단체 보험의 주요 상품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⁷⁵⁾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의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데, 단체 보험은 어떤 단체의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가 집단으로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상법에서는 단체 보험을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설정하여 그들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⁷⁶⁾⁷⁷⁾

한편, 한국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보험사기 행위를 정의하고 상법에서 사기적인 보험청구의 구제 규칙을 규제하고 있지만,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의 판례 입장은 독립적인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일부 보험목적물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과대한 허위 청구를 한 경우, 해당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허위 청구를 한 해당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⁷⁸⁾

2) 개정 방향

한국은 단체 보험 사기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제13조에서 단체 보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2015년 보험법 제13조는 단체 보험 계약을 보험자와 보험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인정한다. 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사기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적 결과는 해당 사기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기행위를 한 구성원 중 일부는 보험계약 항목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박탈당하며, 그들의 보험금청구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물론, 사기행위를 한 구성원 중

75) 문성훈·임동원. (2016). 단체 보험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와 법, 9(2), 42면.

76) 상법 제753조의3.

77)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880면.

78) 대법원 2009. 12. 10. 선고2009다56603, 56610 판결.

일부는 사기행위를 실행하기 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험자는 법적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한국의 단체 보험은 생명보험 범주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재산 보험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는 대량 자금 투입이 필요한 선박 건조 및 선박 자금 조달과 같은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배경에서 단체 보험의 발전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재 소비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상법은 단체 생명 보험의 특징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단체 생명 보험에 대한 특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식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는 행정 규정, 부서 규칙, 업계 규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사전 규제할 수 있다. 또한, 단체 보험 사기 청구와 관련된 규제에서도 단체 보험을 재산 보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장 결론

해상보험의 발전은 전체 보험업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었다. 영국의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 깊고 성과가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100여 년의 발전과정에서 영국은 1906년 해상보험법(MIA 1906)과 판례법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상보험 발전을 위한 도구에서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바뀌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영국은 이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오래된 규칙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 관련 규정 및 "The DC Merwestone" 사건 각주의 판례에 근거하여 영국의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규칙은 새로운 기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기본 이념, 체계적 틀 등이 새롭게 수정되고 있으며 영국의 해상보험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새로운 규칙(New Rule)이 거의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사기적 청구제도는 제4부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두 조항은 사기적 청구의 책임 구분과 선지급 반환 등 문제를 해결하여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 제도가 크게 발전하게 된다. 영국은 해상보험 강국으로서 해상보험사기 대응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한국과 중국의 해상보험사기에 관한 법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우선 보험사기의 이론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보험사기의 의미와 특성 및 해상 보험에서의 보험사기의 구체적 표현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한국, 중국, 영국의 사기적 보험 청구에 관한 관련 법률 제도를 세밀하게 조사하였고 그 후 영국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변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영국의 새로운 보험법 개혁에 대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기적 청구에 대한 입법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중국의 보험법은 제27조에서 사기적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정의와 해상법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중국 보험법의 사기적 청구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의 미비함은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보험 계약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의 법률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사기적 보험금 청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입법에서는 사기적 청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랜 발전을 거친 비교적 성숙한 제도로서, 이론적으로보다 완벽한 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반 이론에 충실하고 영국의 판례법 제도의 성과를 참고하여, '사기'의 개념부터 체계적인 사기적 청구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

둘째,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와 일반보험 사기적 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중국 보험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양자를 완전히 통일하거나, 해상법과 해상보험에 관한 내용에서 영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의 법적 결과를 확립할 수 있다.

셋째, 사기적 청구 규제 법안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중국의 현행 해상보험 사기적 청구 제도는 일반보험과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적 보험금 청구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비례원칙과 피보험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법 정책은 해상보험의 특수성과 국제시장 동향을 적절히 반영하여 보험사를 우호적으로 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국 보험법에는 단체 보험의 사기적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보험법은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서의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고, 중국의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의 실제 상황에 맞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단체 보험은 현재 여전히 생명보험 범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재산 보험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보험법에서의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 규정은 인보험과 재산 보험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단체 보험은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중국 보험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국의 법률과 규정을 참고하여 단체 보험 사기적 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한국 법률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 사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 대한 기만행위와 더불어 보험금 청구행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를 영국의 사기법 제2조 또는 중국의 형법 제198조와 같이 세부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고, 보험금 청구행위와 관련된 사기적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 사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

험자에 대한 기만행위와 더불어 보험금 청구행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를 영국의 사기법 제2조 또는 중국의 형법 제198조와 같이 세부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청구행위와 관련된 사기적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 양승규, 보험법 (제2판), 삼지원, 2005
- 한기전, 보험법, 박영사, 2017
-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연속 간행물

- 고명규(2014), "해상보험에서 최대선의의의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41, (2014)
- 김광국, "영미보험계약법상의 사기적청구에 관한연구", 보험학회지 제62집(2002)
- 김성태, "보험 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2001)
- 김재우, "해상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원칙에 따른 고지의의무에 관한 연구: 2015년 영국보험법과 관련하여", 무역학회지, 44(3) (2019)
- 노명선,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을 위한 연구, 손해보험협회, (2012)
- 문성훈·임동원. (2016). 단체보험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와 법, 9(2), (2016)
- 박세민, "보험 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 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111호, (2009)
- 박일용·안철경, "보험 사기 성향 및 규모 추정", 보험개발원, (1999)
-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상 최대선의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 동향", 무역 상무 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신건훈·이병문,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의무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에 의거한 법률개혁의 주요 쟁점 및 효과를 중심으로", 무역금융보

- 험연구, 22(4),(2021)
 신의기·탁희성·황만성,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방지선진화방향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6)
 이윤석,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한양법학 제21권 제4집, 한양법
 학회, (2010)
 이민정, "MIA에서 최대선의 의무에 대한 연구 -고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를 중심으
 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60) (2013)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 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이정원(2016),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고찰", 海事法学研究
 제28권 제2호, (2016)
 _____, 영국 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7. 6. 19. 선
 고 2016다270407 판결 -. 저스티스, 181(2020)
 _____,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효과에 대한고찰”, 저스티스
 제150호, 한국법학원, (2015)
 장경환, “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계약 법상의 몇 가지 문제”, 경희법학 제40권
 제1호 (2005)
 조해균,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2001)
 조일림·라공우,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구.
 국제상학, 33(2),(2018)
 최병규, “가입 전 발병과 보험계약의 무효 법리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제56권
 (2019)
 한창희, “해상보험에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시행상 문제점”, 법학논총,
 32(3),(2020)
 한낙현,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에서의 보험금부당청구의 취급에 관한 연구: DC
 Merwestone호 사건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18(2), (2022)
 조일림·라공우, “2015년 제정된 영국 보험법과 한국 해상보험 주요조항 비교연
 구”. 국제상학,33(2),(2018)
 진흥기, "영국법상 보험계약 체결 후 최대선의의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무역보
 험연구 제17권 제3호, (2016)

- 정완용,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한국 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5)
- 전해동·신건훈,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학위논문

- 김기혁, “보험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태건,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체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양지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현행 법률과 제도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육태용, "보험사기 대응책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국외논문>

- 陈丽云, 《从最大诚信原则的变化看海上保险法的价值取向》, 大连海事大学硕士学位论文, 2009年。
- 程梦然, 《海上保险欺诈性索赔法律问题研究》, 大连海事大学硕士学位论文, 2016年。
- 初北平, 海上保险法[M].北京:法律出版社, 2020:35.
- 杜莹, 《英国海上保险欺诈性索赔的法律问题研究》, 辽宁大学硕士学位论文, 2017年。
- 盖克清, 《论欺诈行为的法律分野》,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2007年
- 葛延珉, 《海上保险法最大诚信原则研究》, 大连海事大学博士学位论文, 2005年。
- 葛淑梅, 《英国保险法对欺诈性索赔的法律规制及对我国的立法启示》,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2019年。
- 李玉泉, 《论保险欺诈及其对策》, 载《保险研究》1998年第12期。

王利明, 惩罚性赔偿研究[J]. 中国社会科学, 2000 (04) .

郑睿, 英国海上保险法律与实务[M]. 上海: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14 : 269.

——, 英国夸大损失类型保险欺诈的民事法律后果及其启示[J]. 保险理论与实, 2016 (12) .

<국내판례>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1 판결

<해외판례>

Carter v.Boehm,(1766)3 Burr 1905,1910–1912.

Goulstone v.Royal Insurance Company,(1858)1 F&F 276.

Britton v.The Royal Insurance Company,(1865)EngR 66.

Derry v.Peek,(1889)14 App.Cas.337,374.

Wisenthal v World Auxiliary Insurance Corpn Ltd,(1930)38 L Rep 54.

Black King Shipping Corporation and Wayang S.A.v.Mark Ronald Massie (The Litsion Pride),[1985]1 Lloyd' s Rep 437.

Orakpo v.Barclays Insurance Services Co Ltd,[1995]L.R.L.R.443; [1994]3 WLUK 404; [1994]C.L.C.373.

Bucks Printing Press Ltd v.Prudential Assurance Co.,(1994)3 Re LR 219.

K/s Merc-scandia Xxxii v Certain Lloyd's Underwriters and Others (The Mercandian Continent),[2001]EWCA Civ 1275.

Manifest Shipping Company Limited v. Uni-Polaris Shipping Company Limited and Others (The Star Sea), [2001] UKHL 1.

Agapitos v Agnew (The Aegeon), [2002] EWCA Civ 247, [2003] QB 556.

Axa General Insurance Ltd v. Gottlieb, [2005] EWCA Civ 112.

Versloot Dredging BV v. HDI Gerling Industrie Versicherung (The DC Merwestone) [2016] UKSC 45.